

노인복지시설 / 養老院의 現住所

朴 勇 煥
(漢陽大 建築科 教授·建築計劃研究室)



I. 머리말

「老人 福祉 分野의 發展 與否는 한나라의 文明의 程度를 가늠케 한다」英國의 「원스턴·처칠」은 언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오늘날 社會 諸分野의 發達과 함께 그重要性이 強調되어 온 福祉政策은 原來共產主義 思想의 시작과 함께 그概念이 形成되었다. 即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정립된 共產主義는 그들의 一目瞭然한 理論으로 西方世界에 膨大해 있었던 既存 資本主義를 일대 窮地에 몰아 넣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그들의 最大 弱點인 貧富의 隔差에 대한 補完策으로 社會福祉라는 概念을 만들어낸 것이다.

社會福祉가 이렇게 思想的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老人福祉 分野는 古代「하무라비 法典」의 epilogue에 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다만 19세기 產業革命을 起点으로 하여 社會가 점차 產業化, 機能化함에 따라 家族 構成등의 傳統의 人秩序가 무너지고, 老人們이 그들의 役割을喪失하게 되어 社會의 低辺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또한 醫學的인面 等 諸分野의 發達로 人間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人口의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問題가 점차 深刻해졌을 따름이다.

本橋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關心度가 높아가고 있는 老人 福祉 分野中 養老院에 關한 것으로, 여러 關係 文獻과 關係者의 意見를 參照하여 記述한 것이며 特히 養老院의 實態에 關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을 中心으로 實地 養老院을 訪問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한 것으로 간혹, 偏見에 의해 事實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理解를 바라며, 本橋가 다소나마 이 方面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養老院의 沿革

「80歲以上으로서 篤疾 廢疾로 인해能히 自存할 수 없는 者는 그 所望함에 따라 親踐를勿論하고 한 사람의 役을 免除하여 護養하도록 許하고 만약 親戚中 護養할 사람이 없을 때는 마땅히 東西大悲院으로 하여금 모아 安息시키고 公에서 口糧을 支給하고 官員을 보내어 提調 토록 하라」. 이는 高麗史에 記錄된 것으로 忠烈王 34년 11月에 不遇老人에 對한 施設保護에 該當하는 部分을 一部 拔萃한 것이다.

歴史의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老人에對한對策은 비록君主에 의한仁心惠政의 하나로施惠된措置에 불과하기는 하나古代 및中世에서 이미 그形態를 찾아볼 수 있으며高句麗의故國川王 16年(西紀 194年)에 을파소에 의해 이루어졌던救恤制度인賑貸法, 統一新羅時代의 丁田制度등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나具体的으로 오늘날의養老院의起源이 될 수 있는保護施設에關한記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李朝時代의世宗大王때에는養老事業이 매우發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世宗大王實錄에 의하면 世宗 8年 7月 17일에養老院에關한發想과 아울러 이를뒷받침할 수 있는養老法의立法을下命하였다. 하며, 또한救護行政에關한制度가經國大典에集大成되어體系化 되었고 依託할 수 없는老人의收容에關한規定도 두었다고 한다.

韓日合併以後 우리나라는日本의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고 따라서老人福祉事業도 역시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에 의하면「1910年에兩班儒生의耆老와孝子, 節婦의鄉堂의模範者와寡孤獨의憐愍한者에게臨時思賜金을授與하였고 1916年에는思賜賑恤資金을給與하였다」라고記錄되어 있으며 1929年朝鮮貴族保護施設로서財團法人昌福會를設立하여朝鮮貴族을救濟하고年齡 60才以上의勞動能力이없는老人貴族을待接하였다고 하나 이러한貴族,兩班에局限된救濟事業은人道主義思想을 바탕으로實施하였다기보다는當時激化되고 있던民族運動을緩和시키려는一種의撫摩策으로平價하는 것이다. 더욱妥當하리라 생각된다.

1944年3月에는近代的老人福祉事業의始發点이라 할 수 있는朝鮮救護令이公布, 實施되어極貧者와無依託者를救護하려 했으나解放과 함께그다지實效를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美國을비롯한先進國들의救護活動이一時에始作되었으나,持續적으로계속되었던,貧困과人力의不足으로인해 이것또한成果가없었으며當時國家의으로當面한 많은問題들로인해制度의인體系化도갖추지못한채散漫한民間活動으로그치고말았다.

6·25動亂을起點으로하여 수많은戰爭災害民, 以北으로부터의避難民, 戰爭孤兒들의發生으로老人에대한關心은거의等閭視되다가朝鮮救護令을

根幹으로한生活保護法이 5·16革命直後인 1961年 12月 30일公布되고 1969年 11月 10일에 그施行令이制定됨으로해서老人들을위한保護施設인全國의養老院들도 이를根據로運營되게되었다.

또한最近인 1981年 6月에 그동안몇차례에걸쳐시도되어오던老人福祉法案이비로소制定됨으로서施設保護의形態도多角의in面으로推進될展望이다.

한편 1921年에는一般的으로養老院의嚆矢이라일컬어지는聖家養老院이天主敎財團에의해設立되었고, 以後 1925年基督教系統의愛鱗養老院, 그리고 1927年에불교계통의青雲養老院이設立되었으며, 1933年現在全國의 6個施設에 58名이收容되었음이記錄으로알려져있는데大部分의施設들이宗教團體에의해運營되었다고한다. 그후매년 0.8個所程度의增加率을보여 1981年 4月現在全國에地方自治團體에의한公立 3個所 사회복지단체에의한사립 45개소로都合 48個養老院에 3,136명이收容되어있는實情이다.

III. 養老院의 實能 - 서울 地方을 中心으로-

지금바깥세상에서는「福祉國家建設」이니 또는「老人福祉」니하여 한창요란하나이들養老院에起居하는老人들은그러한巨創한외침을듣기에는너무나외진곳에있는듯하다.

그들이어떻게養老院生活을하고있는지,生活保護法이매체무엇이며老人福祉法이制定되면그들에게무슨도움을가져다줄것인가하는것등에대해關心을갖거나알고있는이들은드물다. 다만「人生의마루터」에서그들이마지막으로보내다가가야할이조그마한울타리속의하루하루가너무나도지루하고덧없이느껴질뿐이다.

養老院을한번訪問하려면보통市內에서버스를한두시간씩타고, 게다가20~30分씩걸어들어가야비로소老人들을만나볼수있다. 대개가center地에서벗어난外廓地帶라周邊에人家가드물고空氣가맑아一見老人들이지내기에매우適當한곳일것같으나이러한周邊環境이그들에게있어가장큰苦痛인孤獨感을불러일으키는原因이란것을쉽게느낄수있다.一般的으로우리社

會에서罪를犯한경우犯罪者라하여一定期間을社會와隔離, 服役을시키게된다. 그들에게주어지는罪의멋가가바로孤立이라는점을理解한다면이들養老院들을社會와隔離되어陰蔽된곳에둘으로해서收容老人들에게「社會의인죽음」「心理의인죽음」을가져다준다는것또한理解하고다시한번생각해봐야하지않겠는가. 이들에게있어現實의인悲哀란바로이런것이아닌가싶다.

이들老人들의하루目課를살펴보면이들이얼마나단조로운生活의굴레에서허덕이고있는가를알수있다. 하루세번씩의食事時間, 그리고누구나손수해야만하는빨래, 바느질, 소품정리등의늘반복하는것以外에남은時間은방안에서줄곧「라디오」나T·V를켜놓고누워지거나바깥에나와無限定앉아서보내는게全部이다.老人들끼리모여앉아있노라면별로할얘깃거리가없다. 생각나는것이라곤몇번씩해버린것뿐이고귀담아들어줄만한새로운相對者도없어그저묵묵히지낼따름이다.視線을잃은채表情없이앉아있는이들을멀찌감치서보고있노라면영웅적일것같지않은그모습이늙음이란자체에새로운서글픔을느끼게한다.

지난歲月을그누구보다도어렵게살아온이들의머릿속엔많은생각들이떠오른다. 6·25事變으로헤어져야만했던血肉에대한그리움, 급기야는이들을이곳까지오게했던子息들에대한안타까움등과거의뼈아픈記憶들이아직도가슴속에살아남아이들을아프게하며, 또한죽음에對한이런저런생각들도늘머릿속에서떠나질않는다. 아직도20年前에헤어진딸을찾겠노라熱望하는주름투성이의노파, 老夫婦가各各別途의養老院에收容되어離別아닌離別을하고있는老人등여기養老院에는아픈傷處들로가득하다.

養老院老人들에게있어가장아쉬운것중의하나는바로용돈이다. 용돈이라야그리많은額數를必要로하는것도아니다. 다만한달에한두번정도市內구경갈때의찻삯이나, 가끔씩먹고싶은別食정도, 그리고할아버지들인경우는담배가支給되나할머니들은그렇지못하므로吸煙을하는老人들은담배몇갑을사과을정도면되는것이다. 그나마가까운親知가있는경우에는가끔씩찾아와서한방食口들을같이불려

보잘것 없는 의료시설 —,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는 「경로 우대제도」

내 준비해 온 음식을 待接하고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老人們은 이러한 同僚 老人們이 마냥 부러운 모양이다. 오랜만에 바깥 바람이나 쐬려 나가려 해도 이들을 주저 앓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용돈 問題 때문이다. 「어디서 간단한 일거리만 가져다 준다면 消日도 되고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老人们도 더러 있지만 대개의 老人们이 젊어서 힘든 勞動으로 인해 慢性病인 神經痛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약 40%가량이 中風, 老妄, 結核, '肢體障礙等으로 苦痛을 받고 있고 生活에 대한 意慾을喪失하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이들이 居處하는 각各의 방안에는 여러 形態의 心身障礙老人들이 正常老人들과 混合 収容되어 있어 소위 責任制라고 하여 비교적 健康한老人들이 이들의 身邊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둘보아 출 일손의 不足, 人件費의 不足 등으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게 施設側의 얘기이다. 하여간 이러한 混合 収容 形態는 健康한老人이나 障碍老人兩者에 모두가 매우 不便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특히 全體老人中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結核老人들과 죽음을 앞두고 전혀 起動할 수 없는老人들을 위하여 隔離室 정도는 따로 마련해 줘야 할現實이며 일단老人이 死亡할 時에 따로 安置할 靈安室등이 없이 이들이 起居하는 방에 며칠씩 같이 두어야 하는 점을勘案할 때 靈安室 또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院內에는 아주 基本的의 醫藥品을 除外하고는 醫療施設이나 看護員을 두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항상 治療를 받아야 할 一般慢性病患者들은 웬만하면 참고 견뎌야 할 형편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醫療 service는 있다. 定期的으로 該當保健所에서 찾아와 檢診을 해 주고 있으며, 일단 病이 나면 소위 1.2次 診療施設이라 하여 指定病院을 利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醫療惠澤도事實上 이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이 病院을 利用할 경우 現實的으로 너무 낮게 配當된 政府의 이들에 대한 治療費로 인해, 病院側으로부터 매우 끈대접을 받게 되며, 또한 이들老人들 입장에서도 指定病院을 利用하려면 많이 交通費 등 其他 經費가 오히려 많이 들어 차라리 現實的으로 거의未備한 狀態인 院內의 醫療施設을 充실히 갖춰 可能한 한 自體의으로 治療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施設側의 얘기이다.

所謂「敬老優待制度」라하여 이들 収容老人들도 理髮料, 沐浴費 등을 割引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老人들이 隣近沐浴湯을 실제 利用하려면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것은 이러한「敬老優待制度」가 収容老人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自體가 法的으로 明文化되지 않은 勸獎事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公共施設 이외의 民間施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施設側의 外面으로 인해 몇십명의老人들이 몇군데씩 돌아 다녀야 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우선 이들 収容老人들에게라도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는措置가 아쉽다.

養老院老人들의 特징중의 하나는 이들의 거의가 宗敎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S養老院의 경우는 아예 院內에 佛堂을 마련해 놓고老人들이 利用하게 하



고 있는데, 이들老人들이 信仰을 바탕으로 한超越的價値觀을 가짐으로서 現實生活의 어려움을 克服하려는 心理로理解할 수 있으나, 事實上 그렇게 까지 절실히 宗敎에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별로 많지 않으며相當數가 入所後에 단순히 單調로운 生活의 무료함을 메우기 위한 餘暇善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主目할만하다. 이들에게 좀더 깊은 信仰心을 갖게 함으로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이 다소나마 心的 위안을 받아 每事에 좀 더 意慾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老人들은 入所前의 비교적 어려운 環境과 거칠은 生活, 그리고 낮은 學力 수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障碍要素도 많은 것 같다.

우선 意慾의喪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健康上의 理由 때문이기도 하나 獨自의 生活을 하다가 團體生活

로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他人에 對한 依賴心, 養老院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人生의 落伍者」라고 느끼는 심한 劣等感等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느껴진다. 또한 그들이 自體의으로 可能한 動物飼育, 植物栽培, 讀書등의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등에도 關心을 갖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理由에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入所前에 生活의 餘裕를 누린 적이 있었거나, 學力 수준이 比較的 높은 몇몇 特定老人들만이 항상 이러한 周邊의 소일거리에 關心을 두고 있다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共同生活에 대한 適應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들의 特징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團體生活에 있어서 私小한 理解關係로 인하여 다툼이 잦은 편이고 同療老人에 대한 不滿이相當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며一般的으로 느껴지는 心理의特性은 보통老人들과 다를바 없는 것

같으나 한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人情 많은老人像」과는 좀 거리가 있는, 同療를 간에 극히 利己의 인思考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우선自己自身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방食口들, 그리고 비로소自身들이 속해 있는 養老院 全體食口를 생각하는 式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自身들을 扶養해 출家族이 없음으로 해서自身은自身이 지켜야 한다는 觀念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때문인 것 같으며, 事實上 이들이 病이나 기타 理由로 해서 어려운 일에 逢着했을 때 이들을 情誠껏 도와 줄 수 없는 現實 또한 이를充分히 納得하게 할 만한 것이다. 그들 뒤에 自己自身조차 가누기 힘든 보통 75~6才의 나약한 同療老人들과 항상 돈에 쪼달려 마음뿐인 施設長을 비롯하여 쥐꼬리만한 薄俸에 항상 마음을 두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몇몇 施設從事者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역시 이들老人들만이 生活하고 있는 單層社會에 멀다 않고 찾아오는 異那人(?)을 맞이하는 일이다. 우선自身들을 위해 이곳까지 용케 찾아 준것이 고맙고 同療老人들이 지겨워서 들려주지 않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相對者를 찾아서 좋은 것이다. 이럴때면 이들은 한동안 잊었던 活氣를 되찾고 얼마간의 술렁임이 있다. 이곳을 찾는 訪問客의 類型은 여러 種類여서 일일이 품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確然히 예년에 비

“때”만되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방문객 —, 오히려 괴로워

해 件數가 많이 늘었나 보다. 이것을 순전히 現在 社會 全般에 걸쳐 造成 되고 있는 社會福祉에 대한 關心의 部分的인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는 孤兒院이나 기타 取容 施設에서 흔히 볼수 있는 大學生 씨클등의 結緣 團體에 의한 定期的인 訪問을 별로 눈에 띠지 않고 있으나 사흘마다 한번씩 꾸꾸 찾아와 이들을 無料로 보살펴 주는 鍼術師, 매달 한번씩 이들에게 푼돈이나 마 일일이 老人們의 손에 쥐어주고 가는 50代 영감님등 단골도 제법 있다. 대개의 이러한 이들은 餘裕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꽉찬 生活의 한 部分을 이곳 老人們을 위해 힘겹게 善事하는 사람들이다.

訪問客들 중에는 原來의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에게 累를 끼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가령 힘들여 마련한 善物 꾸러미와 함께 몇시간짜리 發表會를 計劃하거나 또는 짊은이 위주의 힘든 게임 등을 준비하여 이들을 급기야는 피로하게 하고 귀찮은 感情조차 불러 일으키게 하는, 마치 「慰問한다는 名目으로 自身들이 慰勞를 받고 싶어함」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의一方의 關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로 어떤 施設에서는 같은 일들을 防止하기 위해 심지어 訪問時間까지 定해 놓은 곳도 있다.

年末年始가 되면 訪問客 러쉬가 일어난다. 매스콤들은 그동안 달혔던 입들을 일제히 열어 「不遇한 이웃을 돋자」라고 외쳐대며 또한 이때가 되면 社會 여러 團體들이 그들이 訪問할 만한 곳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施設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때에 많이 찾아 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몰려와 그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때에 제일 바쁜 사람은 역시 老人們로서 社會 團體, 學生들, 婦人會 등 그들이 만나고 또 같이 즐겨줘야 할 各樣各色의 사람들로 인해 차라리 방안에 누워 편히 쉬고 싶은 마음 조차 생길 지경이다.

名節이나 年末이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듯 人蹟이 뜯해지고 예나 다른없는 靜寂이 찾아오면 이들 老人們은 새로운 쓸쓸함에 젖게 된다. 「꼭 이런 것이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分明一 年에 한번씩 찾아오는 季節性 流行은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다. 不遇 이웃 돋기 계절이란 따로 없다. 언제 어느 때고 이들에게 關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情이 아쉬운 것이다.

이들과 이웃해 사는 隣近 住民들의 無關心한 態度 또한 理解하기 힘들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도대체 養老院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許多하니 말이다. 결코 이웃일 수 없는 이웃들이 養老院 周邊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가끔씩 特別한 訪問客 들이 찾아 온다. 여기 사는 老人們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院長을 뵈러 오는 白髮이 성성한 老人們이 바로 그들이다. 아들, 딸, 며느리의 구박에 못이겨 차라리 남은 餘生을 이곳에서 보내겠노라고 며칠씩 찾아 오지만 入所하려면 어림도 없다. 養老院의 實況은 이들을 받아줄 만큼 餘裕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보다 못한 수많은 無依託 保護對象 老人们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그 入所 節次가 무척 까다로와 이를 簡素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現



在의 規定을 보면 生活保護法에 의해 만 65才 以上의 老人们로서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事由가 記載된 戶籍謄本과 住民登録謄·抄本, 無依託證明書나 要保護對象證明書를 添附하여 市, 郡, 邑, 面의 社會係나 福祉係에 養老院 入院申請書를 提出하여 措置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過程이 까다로운 것을 事實이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節次는 限定된 施設內에서 「꼭 들어와야 할 사람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關係者の 立場과 또한 너무나도 量的으로 모자라는 現在既存 施設들의 取容 能力を勘案할 때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간다. 節次도 까다롭지만 일단 이러한 節次를 거치더라도 금방 入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年씩 걸린다고 한다.

養老院의 入退所라는 것이 育兒 施設과는 달리 一定期間을 지나면 入所者들이 外部로 排出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게 되면 별일 없는 한 삶을 마칠 때까지 老人們이 지내게 되므로, 한 사람이 死亡해야만 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묘한 双曲線 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개 한 養老院마다 年間 십여명 以上, 많으면 定員의 30%를 넘게 老人们이 새로운 環境에 對한 適應度가 낮아 施設入所하는 해에 死亡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단 死亡하고 나면 몇장의 書類와 一人當 20,000원씩의 政府 補助의 葬禮費와 함께 이들의 지루하고 험한 人生 旅行은 모두 끝나고 指定 墓地에 얼마동안 假埋葬 形式으로 묻혀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緣故者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老人们的 心情은 슬픔에 앞서 이미 죽음이라는 한고비를 넘긴 同僚에 대해 漠然한 부러움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들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은 어찌하면 同僚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을 고생시켜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들을 取容하여 保護하고 있는 施設側의 苦衷 또는 한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公立인 경우는 全額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補助에 의해 運營되고 있으며, 私立 또한 40~60% 정도를 政府 豫算에서 補助받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들 養老院 運營者들이 政府 補助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을 감당할 特別한 수입원이 없이 一般 篤志家에 依存하는 실정이라 하며, 따라서 이러한 依存度에 따라 財政 狀態가 施設別로 차이가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施設들이 資金에 허덕임에 따라 이들은 項目別로 支給되는 政府 補助金을 變則的으로 運用하고 있는 實情으로, 쌀이나 야채 購入費를 施設 修理費로 쓰는 등의 現象이 불가피하다는 한 關係者의 얘기이다. 여하튼 「不遇老人을 돋겠다」는 犠牲者的 精神으로 施設을 運營해온 이들도 時間이 흐름에 따라 金錢의 으로 부닥치는 苦衷으로 인해 애당초의 意慾을喪失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慈善事業家가 아닌 社會事業家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그들에 대한 社會의 재인식을 當付하며, 「政府에서도 언제까지이고 慈善에 미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現實的인 財政補助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筆者가 S 養老院을 訪問하였을 때 다른 養老院과 색다른 分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財政 狀態가 良好한 편으로 住居 環境이나 食事, 娛樂 施設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管理者

빈약한 시설 — 노인을 위한 시설은 거의 안되어있다.

側에서 얘기하듯, 웬만한 中流 家庭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施設 老人們의 不滿은 자못 심각한 편이었다.⁹ 「여기 老人們은 自己들이 市民 稅金 徵収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고마와 하기는 커녕 무슨 不滿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라며 이들 老人們의 염치없음을 탓으로 「얼마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면 敬老思想 같은 것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한 實務者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施設 老人們을 無感覺하게 대하는 말투며, 그들이 이곳을 하나의 쉬어가는 직장 정도로 여기는 思考方式, 그리고, 乞人行脚이나 行方不明등의 不作用 등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老人们的 바깥出入을 統制해 버리는 등의 無事安逸主義에 치우친 극히 事務的인 態度, 단순히 衣食住만 잘 解決해주면 되리라는 따뜻한 보살핌이 缺如된 생각들이 바로 이곳 老人們을 不滿스럽게 하는 까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老人們에겐 따뜻한 人情이 必要한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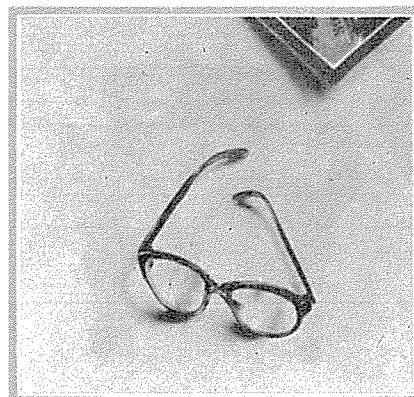
이들은 새로운 環境이나 施設에 대한 適應度가 매우 낮은 편이라 養老院 入所當時에는 애로事項이 많으나 일단 適應이 되면 점점 滿足度가 높아지는 모양이다. 특히 이들이 生活하고 있는 老朽하고 不合理한 住居環境에 이들이 그다지 不滿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住居環境의 問題點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施設 自體의 老朽함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선 이들에게 特急한 것은 安全事故에 對備하는 것이다. 실제는 이곳에서 發生하는 대부분의 事故가 넘어지거나 혹은 떨어져서 생기는 것들이다. 문턱등의 하찮은 障碍物에 의해서도 이들은 生命에 지장을 받기도 하며 더더구나 변두리의 산기슭의 傾斜地에 위치한 경우, 地面의 高低差로 인해 생긴 급한 傾斜路, 계단, 난간없이 세워진 築臺등 無計劃하게 만들어진 通路部分에는 언제나 이들 老人們을 威脅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現在 한 방에 7~8名씩, 많으면 10여 名이 거거하고 있는 収容室도 매우 狹小하고 人員이 많은 것 같다. 老人们이나 施設側의 얘기로는 대체로 서너명 쪽으로 生活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한다. 이들이 集團生活에서 서로 상대방을認識하고 納帶感을 가져 그를 나름대로의 家族感을 느낄 수 있는 알맞는 規模

의 人員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다. 外國의 경우에 現在 한 施設當 50~60명으로 人員數를 配定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00~120名 정도의 収容은 매우 無理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現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総合하여 記述하였다. 이외에도 言及하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으나 省略하기로 하며 다만, 우리 社會에서 이들에게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기를 바라고 싶다. 이들은 울타리 밖의 다른 老人們과 特別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둘러싼 周邊 環境의 압박으로 인해 이곳까지 들어 왔을 뿐 그들自身은 极히 正常의이며, 따라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正常의 生活을 영위하게 하느냐가 重要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이러한 생각으로 對處해 나갈 때, 그들의 고질적인 問題인 孤立感의 解消가 어느 정도 可能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이들 養老院들도 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단순한 収容形態에서 벗어나 文化的인 要素를 갖춘 保護의 形態로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V. 養老院 - 그 問題點과 對策

養老院의 當面한 果題로서는 우선 施設의 収容能力의 不足, 老朽化, 障碍老人과의 混合 収容의 解決 專門從事者的不足 醫療의 施設의 未備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施設의 不足에 대하여 알아보면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施設 保護를 해 줘야 할 老人數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正確한 調査나 統計가 없는 實情이므로, 1977年 保健社會部 統計資料를 빌리자면, 總老人人口數의 0.6%를 施設 保護의 基準으로 잡고 있어 이 數置를換算하면 現在 65才以上의老人을 146萬名으로 볼 때 8,760名이란 계산이 된

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사실상 施設保護를 해 줘야 할 在家保護對象者, 零細民老人等 現在 國家에 의해 生計保護를 받고 있는老人들을 합치면 全體老人의 11.6%에 該當하는 170,000여명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現在 収容率은 앞서 點한바와 같이 1981年 現在 48個 施設에 3,136名으로 全體老人의 0.22%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가 5.3% 정도이며, 스웨덴이 4.5%,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8.6%정도로 대단히 높은 収容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까운 日本의 경우 1.4%정도로 비교적 낮은 収容率을 보이고 있으나 韓國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G.N.P 1,000~1,500 수준의 1~1.5%를 適正線으로 잡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施設 収容 ability의擴張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 수 있다.

施設의 增加狀態를 보면, 1921年以後 지금까지 60년 동안 48個所가 設立 되어 매년 1個所에도 못 미치며 특히 最近10년간을 볼 때 1971年의 46個所의 収容人數 2,529名에 비해 施設數는 그동안 2個所가增加한 반면 収容人數는 600名 정도가 늘어나 相對的으로 1施設當 定員數가 늘었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1980年 現在 託兒施設을 제외한 全國의 兒童施設이 327個所는 28,191名을 収容하고 있으며, 더구나 全體 兒童의 數가 總人口數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반면老人人口의 數가 增加 추세임을 감안할 때,老人施設의擴張은 시급한 과제이다.

養老院들은 認可를 받을當時 特性에適合하게 建築한게 아니라 대개가 一般家庭집을 利用하여 施設 認可를 받았기 때문에, 近來에 세워진 몇몇 施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老人들이 居住하기에 不適合하여, 또한 集團生活에 대한 考慮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最高 60년에서 20년이 지난 것들이 全體의 半數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각 部分의老人와 問題點들을 일일이 열거 하기 힘든 형편이다.

現在 施設에 대한 法의 根據는 1961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25條 및 27條와 1969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施設設置基準令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이 自體가有名無實한 실정이며,老人福祉 収容施設에 관한 獨自의 施設基準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現視point에서 그것이 잘 지켜질지가 의문시 된다. 여하튼 政府의 補助에 의해 部分의 補修를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아쉽고, 전문요원들이 맡아해야—.

今後の建築에 있어서老人의特性을考慮한充分히根據 있는基準을研究, 마련하여全体施設에 대하여一貫性 있는補修 및新築,增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無依無託한老人들로서 65才以上의貧困한者를對象으로養老院에收容하고 있는實定이나健康狀態에 따른施設의分類는無視되고 있다. 따라서分体老人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障礙老人의分離收容이 시급히解决되어야 하며, 특히各施設當平均 3~5名씩 차지하고 있는結核患者들은保健所에서定期적으로投藥을 하고는 있으나 이들을隔離,收容할隔離室이 없음으로 해서 점차結核患者가 늘어나는点은빨리解决해야 할問題인 것 같다.

한편,養老院老人들의現實的인面에서의 가장問題視되는点이社會의孤立에 따른孤獨感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解決策이나論難이 한번도提起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의養老院에 대한기존政策과一般的認識이이들을구식진곳에隔離시켜야 한다는收容所의인性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當然한것으로여기고 있는데, 1960年以後外國에서는이들養老院을住宅地내에設置하도록許可基準을定하여 實施하고 있다고하며, 그主要한意圖는收容老人에對해隔離狀態가 아닌地域住民과의交流를勸奨함으로 해서 이를老人들에게社會의落伍者라는劣等感에서탈피하게하여그들이住民의一部라는의식을갖게해서이발소, 목욕탕,식당, 진료소등一部施設들을低廉한價格으로利用하게함으로 해서相互“give and take”에立脚한共感帶를形成하는所謂“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care”가 바로그것이다. 여하튼關係者들은老人들의孤獨感을解消시킬수 있는根本의인對策을講究해 봄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社會福祉, 특히老人福祉施設從事者에 있어 전문가가全無한狀態이다. 短期間의教育을통해서「社會福祉從事者資格證」이란것을發給하고 있는形편인데, 現在全体養老院에總 288名의從事者が근무하여收容人 10.8名當 1名꼴이 되며, 그중이들有資格者は從事者の 10%미만에그치는셈이다. 日本이 1977年現在施設當平物從事員이 18.9名이며收容者 2.8名當 1名인 것에비교하면施設從事者

의確保에關한問題가 얼마나시급한가를알수 있다.

다음으로는收容老人에 대한醫療惠澤問題인데, 1977年 1月부터實施된醫療保險制度로收容老人들도醫療保護對象者로惠澤을 받을수 있게되었으며또한生活保護法, 醫療保護등에根據한수 있으나現實의으로볼때施設의地域의in問題, 다시말해서病院이나保健所의거리가너무멀어交通費나醫師往診料등이治療費보다오히려더들게되고老人들이慢性病이 많아지속적인治療를要함으로해서現在로서는全無狀態인施設內의醫療設備을갖춰可能한한院內에서解决하는方案을마련하는것이좋을것이다.

以上에서現在當面한 몇가지問題점을들어보았으나보다根本의인것은現實의諸問題들을뒷받침해줄수 있는財政의in補助라고하지않을수 없다. 이제껏老人福祉에投資한政府의比重은全國48個養老院에대한運營資金補助와生活保護法에依據하여居宅保護對象者中老人들에대한生計유지비정도가全部인實情으로, 이것은G.N.P의 0.7%에 해당하는社會福祉分野의一部인 것이다. 그러나老人福祉分野는타분野에비해매우소홀히다루어지고있는데, 이러한이유는老人들이이미經濟的役割喪失로非生產的部類에속한다는認識으로인해나타나는政策의in結果로여겨진다. 자라나는兒童들이장차社會에充分히기여할수 있으므로保護育成되어져야한다면,老人들또한이미社會에기여한댓가로의당國家로부터保護를받아야 할權利가있지않은가생각된다.老人에대한恭敬의美德을들어老人問題에있어별問題가없다고여기고있으며,政策上으로도家宅保護에重點을두어,施設保護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 금번에制定된老人福祉法案에老人들의財政과健康에따라나눈몇가지保護施設의明文化에도매우苦哀이따랐다는關係者의뒷얘기이다.

오늘날이려한保護施設이多樣化된先進國에서도과거에뿌리깊었던傳統의秩序가產業化的여파로인해점차變質되어오늘날에이르렀음을감안할때언제까지나傳統의in美德에만그쳐서는안된다.

老人福祉行政을적극추진하기위해서는行政組織이分化되어老人만을위한全擔機構가設置되어야한다. 日本

에서는厚生省 산하에社會局이있어여기에는老人福祉課와老人保健課가各各分化되어있으며,美國에서도1965年老人福祉法에의하여保健,教育,福祉省(Depo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내에“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機構를두고老人福祉에대한問題를全擔시키고있는反面에,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行政上의分化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러한結果로責任所在의不明確性,責任回避性,責任轉嫁傾向등여러가지矛盾이노출되고있는것이다.

福祉行政要員들에있어서도이分野를專攻한전문가를養成하여實務를담당하게해야겠으며,經濟的安定策으로國民福祉年金制度가조속히實現되어야하며停年制度에適用되지않는老人들을위한就業을앞선해줌으로서生計保障에도움을주도록해야한다. 또한老人들에알맞는老人住宅의標準model을研究하여이를권장해야하며,教育,文化,娛樂등에대한多樣한program의開發을서두를것이며,이러한諸分野를뒷받침해줄수있는研究機關을育成을補助해줘야한다.日本에서는最近10年間老人問題에대해상당한成果를거두고있으며, 1978년 한해동안에이와관련한200여편의主要한論文들이發表된바있으며,東京老人問題研究所에서는1975年度研究費支出額이80億엔에달하였다고한다.美國의國立老人研究所의研究費豫算또한1978年度에3,700萬弗에달하는엄청난숫자였으며,英國이國家財政狀態가넉넉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世界에서가장모범적인老人福祉國家로성장할수있었던것도1940年度부터老後保障制度의確立을위해꾸준한研究를해온덕분이라고한다. 이에비해現在몇몇學者들이나民間團體에의해간헐적인研究로그치지는現實을생각할때심한격차를느끼지않을수없다.

老人福祉에關한問題点들은이外에도매우많은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重要한것은國家의老人福祉에대한意志와老人에대한國民들의關心임을두말할나위도없겠다.

끝으로老人問題는特定部類에局限된일이아니라우리가언젠가는한번씩부딪칠必然의인것임을강조하며글을맺는다(*)